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재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69
----------	-------

제출년월일 : 2024. 1. 8.
발 의 자 : 김재국 의원 등 17명

1. 제안이유

- 지자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하자 검사 행정 업무 처리 미흡 등의 문제로 시설공사에 대한 불신과 예산 낭비 초래라는 시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철저한 하자 검사 실시, 지도점검 강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운영 등 체계적인 하자 검사 관련 업무 절차를 명시하여 시설공사의 부실화 예방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설공사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안 제6조)
-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 하자 검사내역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3. 제정조례안 : 붙임 1
-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2
- 5.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 6. 부서검토의견 : 붙임 4

7. 조례안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조례안 예고 : 2023. 12. 20. ~ 2023. 12. 28.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실 공사 및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 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자 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 검사)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 검사를 실시한 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 검사 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 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

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방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보수처리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관리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완료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시장은 안산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안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김재국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62)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9-369호
----------	---------

제안년월일 : 2024. 1. 25.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수정이유

- 불필요한 단서 조항을 삭제함.

주요골자

-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삭제 (안 제5조)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5조(하자 검사) ① (생략)</p> <p>② 하자 검사를 실시한 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u>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u></p> <p>③ (생략)</p>	<p>제5조(하자 검사)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 ----- . <u><후단 삭제></u></p> <p>③ (제정안과 같음)</p>